

JOURNAL OF
PUBLIC RELATIONS

한국PR학회 회원 규정

『홍보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홍보학연구』 연구윤리 규정

『홍보학연구』 논문심사 규정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2014)

한국PR학회 제18대 집행부 현황

『홍보학연구』 논문공모 안내

입회원서

한국PR학회 회원 규정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홍보 또는 이와 관련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상인 자
2. 공인된 연구 기관 및 단체에서 홍보와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향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홍보학 또는 인접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홍보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전문 홍보인
5. 홍보 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의 전문 홍보인

제7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홍보학 또는 인접분야의 석, 박사 학위 과정에 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홍보 또는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10년 미만이 되는 사람

제8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홍보 관련 기관, 단체 및 연구소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홍보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4.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연 회비의 유효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조(회원의 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

1. 본 학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신입 회원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2조(회원의 제명) 홍보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학회의 회칙을 위반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정관에서 일부 발취함)

『홍보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홍보학연구』(혹은 한국PR학회) 편집위원회의 활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

『홍보학연구』의 편집,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격

편집위원회 위원의 선정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전국 규모의 학회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대외 활동이 많은 회원으로 한다.

2) 조직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국내외 학자로 구성한다.

3) 임원의 위촉 및 임기

- 편집위원은 각 분야별 학문적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선임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무

위원회는 우수 연구 논문 발굴 및 『홍보학연구』에 게재될 논문 선정 그리고 편집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5) 편집회의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논문심사

-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담당한다.
- 2) 편집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문적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총 10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3)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평가서를 작성,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4.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 부칙

이 규정은 2005년도 편집위원회 구성시점부터 적용한다.

『홍보학연구』 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PR학회(이하 본 학회) 제4조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및 언어)

- ① 본 학회는 국내 학술지로 『홍보학연구』(영문명: Journal of Public Relations)를 발행한다.
- ②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3조 (발행시기) 『홍보학연구』는 연 6회로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 1호 : 2월 28일
- 2호 : 4월 30일
- 3호 : 6월 30일
- 4호 : 8월 31일
- 5호 : 10월 31일
- 6호 : 12월 31일

제4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 논문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논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판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6조 (배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한국PR학회에 있다.

제7조 (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논문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논문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 PR학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

[2016. 3. 3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 3. 31부터 시행한다.

『홍보학연구』 연구윤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홍보학연구』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2)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 사용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제재 및 조치 결과보고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자격 정지(최소 3년 이상), 게재논문 삭제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공시할 수 있다.

5.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에 대한 권리 보호

-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2) 연구 부정행위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관련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 3) 징계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기타

이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침 및 사회 상규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보학연구』 논문심사 규정

1. 심사방법

-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단 중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단,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사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회원들 중에서 임시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요청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를 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혹은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것이다.
- 4) 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5) 심사결과가 「무수정 게재」로 일치할 경우,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 6) 심사결과가 「부분수정 후 게재」로 일치할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종합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7) 「대폭수정 후 재심사」로 심사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음호에 재투고 할 수 있고,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8)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9) 심사결과가 게재(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와 불가(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단, 「게재불가」 2인, 그리고 「대폭 수정 후 재심사」 2인의 결과를 받은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 10)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1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2. 심사 기준

각 논문의 항목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 2) 분석의 엄밀성
-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 4)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 5) 관련문헌/자료의 적절성(각주 포함)
- 6) 연구 결과의 의의
- 7) 문장의 독이성
- 8) 논문의 독창성
- 9) 논문제목의 적합성

각 논문의 관련영역에 대한 연구 기여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주제의 중요성
- 2) 이론적 기여도
- 3) 방법론적 기여도
- 4) 연구 결과의 실용성

3. 편집 방침

- 1) 논문의 게재 순서는 접수순서와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학회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 게재확정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편당 100,000원, 외부지원논문 20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지며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PR학회가 가진다.
- 4)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1월 13일에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 (2014)

2014년 7월 제정

이 원고 작성 규정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그리고 언론정보학회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통일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그리고 지역언론학연합회가 2002년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규정은 또한 미국심리학회의 <출판 지침>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과 한국심리학회에서 출판한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본 규정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두 책의 규정을 따른다.

1. 논문의 구성 요소와 내용

논문은 제목, 저자명과 소속, 국문 초록,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영문 초록 순으로 구성한다. 편집 용지는 A4, 위아래 여백은 35 mm, 좌우 여백은 각각 30 mm,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 장평은 95, 자간은 -10, 그리고 줄 간격 160%을 권장한다.

1) 제목, 저자명과 소속, 초록

- (1) 논문 제목과 부제목은 진한 글씨로 가운데 정렬한다.
- (2) 저자명은 논문 제목 아래에 쓰고 가운데 정렬한다. 저자 소속은 기관명, 부서명, 직위 순으로 저자명 한 줄 아래, 소괄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줄을 바꾸어 기재한다.
- (4) 초록은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문단 구분 없이 150 단어(600자) 정도로 작성한다. 들여 쓰기를 하지 않으며 양쪽 정렬한다.
- (5) 초록 한 줄 아래 '핵심어(영어 논문의 경우, Keywords)'는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 3 - 5개를 선정하여 나열한다.
- (6) 사사(Acknowledgement), 연구기금 출처, 학위 논문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명시, 저자(들)의 이메일 주소, 교신 저자 등 명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용해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아래의 예 참조).

<p>○ 제목과 부제: 진하게, 가운데 정렬</p> <p>○ 저자명 가운데 정렬</p> <p>○ 소속 • 가운데 정렬 • 소괄호 안에 표기</p> <p>○ 국문 초록 • 150단어(600자)이내 • 양쪽 정렬 • 들여쓰기 없음</p> <p>○ 핵심어 • 양쪽 정렬 • 3-5단어</p> <p>○ 각주 • 사사, 이메일 주소, 교신 저자 표기 • 해당 요소에 별표(*)로 표시</p> <p>○ 쪽 번호 • '표지부터 시작하고 표지 하단 중앙에 기입한다.'</p>	<p>소셜미디어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개방형/폐쇄형 소셜미디어 비교*</p> <p>홍길동** (한국언론연구소 연구위원)</p> <p>김나래*** (한국대학교 언론학과 교수)</p> <p>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통하여 소셜미디어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가 교량적/결속적 사회자본 및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관찰했다. 소셜미디어를 네트워크 성격에 따라 개방형 네트워크와 폐쇄형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전자는 교량적 사회자본의 강화에 후자는 결속적 사회자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는 교량적/결속적 사회자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사회적 참여는 소셜미디어 유형별 이용정도와 이용동기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소셜미디어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성격의 매체를 이용하고, 그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p> <p>핵심어: 소셜미디어, 참여, 교량적 사회자본, 결속적 사회자본, 이용동기</p> <p>* 본 연구는 한국언론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honggildong@hankukresearch.org *** keumnarae@hankuk.ac.kr, 교신 저자</p>	
---	--	--

2) 본문

(1) 본문의 소제목들은 수준별(상위, 중간, 하위 수준)로 구분하고 '1. → 1) → (1)' 식 표기를 사용한다(아래 예 참조). 소제목들은 진하게 쓰며,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줄 바꿈을 한다. 필요에 따라 제4수준 또는 제5수준 소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1) 조사 참여자와 조사 절차

2) 독립 변인의 측정

3) 종속 변인의 측정

(1) 행동 변인의 측정

4. 연구 결과

- (2) 새 문단의 시작은 한 글자(두 칸) 들여쓰기를 한다. 단, 블록 인용, 소제목, 표와 그림의 제목 그리고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 (3) 본문에 한자나 외국어가 등장할 경우, 먼저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이미 한번 사용한 외국어는 이후 한글로만 표기한다.
- (4)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이나 참고 문헌의 출처는 각주로 하지 않는다.

3) 참고 문헌, 부록, 영문초록

- (1) 참고 문헌은 본문의 끝에서 두 줄을 띄운 후, 가운데 정렬로 진하게 참고 문헌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참고 문헌 목록의 작성”을 참조한다.
- (2) 분량이나 내용 전개 등의 문제로 본문 내에서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부록에 제시한다(예, 내용 분석의 틀, 실험 연구에 사용된 자극 재료, 설문 문항, 연구용 프로그램 등). 왼쪽 정렬로 진하게 부록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부록이 여러 개일 경우 로마 숫자로 번호를 부여하며(예, 부록 I-1, 부록 I-2, 부록 II-1, 부록 II-2), 각 부록은 별지에 새로 시작한다.
- (3) 영문 초록은 참고 문헌(부록이 없을 경우) 또는 부록 뒤 별지에 작성한다. 영문 초록은 국문 초록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되, 제목의 왼쪽 위에 진하게 ‘Abstract’라고 표기한다(왼쪽 정렬). 저자의 소속은 직위와 기관명만(예, Associate Professor, Hankook University) 표기한다.

2. 문헌 인용 표기법

1) 일반적 인용 규정

- (1) 저자명이 본문 중에 나올 시, 국내 저자의 연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쓰고 출판 연도를 괄호로 묶어서 쓴다(예 1). 외국 저자명은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로 이름을 표기한 후 출판 연도를 적는다. 동양 저자명은 모두 쓰지만(예 2), 서양 저자명은 성(姓)만 표기한다(예 3). 외국 저자명을 본문 중에 재차 인용할 경우, 우리말식 음독만 쓰고 원어 이름은 표기하지 않는다(예 2와 예 3).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예 4). 동일 저자의 동일 논문을 다른 문단에서 다시 인용할 때는 출판 연도를 쓰지만, 같은 문단 안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출판 연도를 쓰지 않는다.

[예 1] 홍길동(1996)은 ... 주장했다. 홍길동은 또한 ... 주장했다.

[예 2] 마오쩌둥(毛澤東, 1977)은 ... 주장했다. 마오쩌둥은 또한 ... 주장했다.

[예 3] 윌리엄스(Williams, 1990)는 ...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또한 ... 주장했다.

[예 4] 밀턴(Milton, 1875/1998)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

- (2) 저자명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인용할 내용의 문장 뒤에 저자명(서양저자는 姓만)과 출판 연도를 쓴다([예 1]).

[예 1] ...를 제시하였다(홍길동, 1986). ...을 주장하였다(Williams, 1990).

- (3) 재인용 시, 원전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하고 쌍점(:) 뒤에 재인용한 자료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한다([예 1], [예 2]).

[예 1] 홍길동(2000: 장길산, 2005 재인용)은 ...

[예 2] ...를 주장하였다(Williams, 1979: 홍길동, 1991 재인용).

- (4) 약 40 단어 이하의 글을 직접 인용할 경우, 직접 인용하는 단어, 어구, 문장을 따옴표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저자명, 출판 연도 그리고 쪽수를 쓴다([예 1]과 [예 2]). 번역서를 인용할 때,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예 2]). 국내 문헌을 직접 인용할 경우, "(25쪽)"식으로 표기한다. 외국 문헌 직접 인용의 경우는 "(p. 25)"또는 "(pp. 25-26)"식으로 표시한다.

[예 1] 홍길동(1996)은 "정치는 문화"(25쪽)라고 주장했다

[예 2] 윌리엄스(Williams, 1990/2014)는 "문화는 정치"(7쪽)라고 주장했다.

- (5) 다른 저자가 쓴 약 40 단어 이상의 글을 직접 인용할 경우, 별도의 블록을 만들어서 따옴표 없이 제시하고 블록 전체를 들여쓰기 한다. 최종 마침표 뒤에 괄호를 열고 저자명, 년도 그리고 쪽수를 표기한다.

2) 여러 저자의 단일 연구 인용

- (1)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를 본문 중에 인용할 경우,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그 연구를 인용할 때마다 두 저자명을 모두 기재한다([예 1] 과 [예 2]). 문장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인용할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들은 가운데점(·)을 사용하여 구분하거나([예 3]), 가운데 점을 대신하여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예 4]). 이 경우, 출판 과정에서 쉼표를 가운데점으로 대체한다. 서양 저자명은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예 5]).

[예 1] 홍길동과 장길산(2010)은 ...

[예 2] 윌리엄스와 워싱턴(Williams & Washington, 1990)은 ...

[예 3] ...을 발견했다(홍길동·장길산, 2010).

[예 4] ...을 발견했다(홍길동,장길산, 2010).

[예 5] ...이 발견했다(Williams & Washington, 1990).

- (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연구를 본문에 인용할 경우, 처음 인용할 때만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 ‘등’(또는 ‘외’)을 사용하여 표시한다([예 1], [예 2], [예 3]). 외국 문헌의 경우,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 ‘et al.’을 사용하여 표시한다([예 4]). 여섯 명 이상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처음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명 다음에 ‘등’이나 ‘외’ 또는 ‘et al.’을 기입한다.

[예 1] 홍길동, 장길산, 그리고 임격정(2010)은 ... 주장했다. 홍길동 등은 또한 ...

[예 2] ... 발견했다(홍길동 · 장길산 · 임격정, 2010). ... 발견했다(홍길동 등, 2010).

[예 3] 윌리엄스, 워싱턴, 그리고 스미스(Williams, Washington, & Smith, 1990)는 ... 주장했다. 윌리엄스 등은 또한 ... 주장했다.

[예 4] ...을 발견했다(Williams, Washington, & Smith, 1990). 또한 ...도 발견되었다(Williams et al., 1990).

3) 두 편 이상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 표기 순서

- (1) 한 괄호 안에 두 개 이상의 연구를 인용 표기할 때에는 먼저 국내 문헌, 동양 문헌(국가명의 가나다 순), 서양 문헌 순으로 배열하고, 저자명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연구와 연구 사이에는 쌍반점(:)을 기입한다.

[예 1] 여러 연구들(장길산, 1994; 홍길동, 2000; 柄谷行人, 2009; 毛澤東, 1977; Washington, 1990; Williams, 1990)에서 ...

- (2) 동일 저자의 연구를 두 편 이상 인용할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예 1]). 이 때 저자명은 한 번만 기입하고 출판 연도만 쓴다. 출판 연도까지 동일할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서로(영문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 출판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다르게 제시한다([예 2]).

[예 1] 선행 연구들(홍길동 · 장길산, 1992, 2011, 발간중)에서 ...

[예 2] 최근 연구(홍길동, 2010a, 2010b)에서는 ...

3. 참고 문헌 목록의 작성

1) 일반적 규정

- (1) 참고 문헌은 본문 다음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가운데 정렬, 진하게)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
- (2)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첫째 줄(行) 세 칸 내어쓰기를 하여 참고문헌 간 구별을 쉽게 한다.
- (3) 국내 문헌, 동양 문헌(일본어, 중국어), 서양 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예컨대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 (4) 한글어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의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5) 제1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를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한다.
- (6)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 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등을 넣어 구별한다.
- (7) 저자가 없는 문헌은 문헌 제목을 저자 위치에 두고 그 다음에 발간 연도를 기재한다. 단, 본문에서 ‘Anonymous’라고 인용한 것은 이를 저자명으로 간주한다.
- (8) 국내 문헌의 저자명은 완전한 성명을 표기하고, 동양 문헌은 완전한 성명을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서양 문헌은 저자의 성(last name)을 적고, 이름(first name)과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생략 표시로 마침표를 찍는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들은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구분하거나(예, 홍길동·장길산·임격정) 생략표 사용으로 구분한다(예, 홍길동,장길산,임격정). 생략표 사용한 경우는 출판과정에서 가운데점으로 대체한다. 서양 문헌의 경우는 맨 마지막 저자 이름 앞에 ‘&’를 사용하여 이름들을 구분한다(예, Smith, A. B., Johnson, C. D., Williams, E. F., & Brown, G. H.).
- (9) 출판 연도는 저작권 표시(©)에 표기된 연도를 가리킨다. 출판 연도는 저자명 뒤의 괄호 안에 표기하되, 출판 예정일 경우에는 출판 연도 자리에 ‘발간중’(서양 문헌은 ‘in press’)이라고 표기한다. 출판 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라고 쓴다.

2) 일반적 문헌의 종류별 표기

- (1) 학술 논문. 학술논문은 연구자명, 출판 연도, 논문 제목, 정기 간행물명, 권수(volume number), 호수(issue number), 쪽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서양 학술지 논문의 경우,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Title of the article: Subtitle of the article). 국내 정기 간행물명은 화살괄호(<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예, <한국언론학보>). 서양 정기 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Journal of Communication*). 국내 학술지 논문의 경우, 권수와 호수를 ‘몇권 몇호’라고 표기하고 쪽수를 기입한다. 쪽수는 붙임표(-)를 사용한다(예 1). 서양 학술지 논문의 경우, 학술지명 뒤에 권수를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호수는 괄호 안에 표기하되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2). 만일 해당 학술지가 연속번호 체계(즉, 이전 호의 쪽수가 다음 호로 이어짐)를 사용할 경우에는 호수(issue number)를 적지 않는다(대부분의 서양 학술지는 연속번호 체계를 사용).

[예 1] 홍길동 (2014). 한국 언론의 새로운 지평 연구. <한국언론연구>, 35권 1호, 23-54.

[예 2] Knapp, M., Ellis, D., & Williams, B. (1980).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terms. *Communication Monographs*, 47, 262-278.

- (2) 저서 또는 보고서. 저서 또는 보고서는 저자명, 편집서 여부, 출판 연도, 저작물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국내 편집서일 경우 저자명 뒤에 ‘(편)’, 서양 편집서일 경우 ‘(Ed.)’ 또는 ‘(Eds.)’를 표기한다(예 2, [예 3]). 국내 저작물 제목은 화살괄호(< >)를 사용한다. 서양 저작물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Title of the book: Subtitle of the book*). 판회수(edition)는 제목 뒤에 (제2판)식으로 표기하고, 영문일 경우에는 ‘(2nd ed.)’식으로 표기한다.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와 나라이름(미국의 경우, 주) 그리고 출판사 명을 표기한다. 쌍점(:)으로 출판사명을 구분한다. 보고서는 보고서 일련번호를 보고서 제목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예 4], [예 5]).

[예 1] 홍길동 (1990). <한국 언론>. 서울: 책나라.

[예 2] 장길산 (편) (2014). <외국 언론>. 부산: 책동네.

[예 3] Burgoon, J. K., Bowers, J. W., & Woodall, W. G. (Eds.) (1986). *Nonverbal communication: The unspoken dialogue*. New York, NY: Harper & Row.

[예 4] 홍길동 (1999). <한국의 언론인> (조사 분석 99-030). 서울: 한국언론재단.

[예 5]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82).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DHHS Publication No. ADM 82-119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3)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 단행본으로 발간된 서적에 포함된 문헌을 인용했을 경우,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출판 연도, 장의 제목, 편집자명, (편), 편집서명, 해당 쪽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장의 제목은 학술지명 표기에 따르고 편집서명은 저서 표기에 따른다. 서양 문헌의 경우, 편집자명 앞에 'In'을 쓰고 이름(first name)과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의 첫 글자를 쓰고 성(last name)을 기재한다([예 2]). 마지막 편집자의 성 뒤에 바로 '(Ed.)' 또는 '(Eds.)'를 쓴다.

[예 1] 홍길동 (1990). 한국 언론의 현재와 전망. 장길산·임격정 (편), <한국 언론학의 조망> (45-66쪽). 서울: 새나라.

[예 2] Berger, C. R. (1987). Communicating under uncertainty. In M. E. Roloff & G. R. Miller (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pp. 39-62). Newbury Park, CA: Sage.

- (4) 번역서와 편역서. 번역서 또는 편역서는 원저자, 원저의 출판 연도, 원저의 제목과 출판본, 역자, (역), 번역서의 출판 연도, 번역서의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역자명 뒤에 '(역)' 또는 '(편역)'을 표기하여 역서임을 표시한다([예 1]). 서양 문헌의 경우, [예 2]의 표기 방식을 따른다.

[예 1] Seidman, S. (1998). *Contested knowledge: Social theory in the postmodern era* (2nd ed.). 박창호 (역) (1999). <지식 논쟁: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예 2]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f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NY: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 (5) 학술대회 발표 논문.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발표자명, 발표 연도 및 월, 발표 논문 제목, 학술발표회명, 발표 도시 순으로 표기한다([예 1]). 발표 논문 제목은 저서 또는 보고서 제목 표기 방식을 따른다. 발표 장소는 발표 도시와 함께 구체적인 발표 장소도 표기할 수 있다. 서양 또는 국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예 2]의 형식을 따른다.
- [예 1] 홍길동 (2014, 5월). <한국 방송 정책 연구의 동향>. 한국방송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언론정책 분과. 서울: 한국대학교.

[예 2] Presenter, A. A. (Year, Month). *Title of paper or poste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Organization Name, Location.

- (6) 학위 논문. 국내 대학의 학위 논문은 저자명, 학위 수여 연도, 학위 논문 제목, 학위 수여 대학, 학위명 순으로 적는다. 서양 대학의 경우, 먼저 학위명을 표기한 후 심표를 하고 학위 수여 대학 그리고 국가명(미국은 주명)을 표기한다. 학위 논문 제목은 저서 제목 표기 방식을 따른다.

[예 1] 홍길동 (1994). <한국 방송 정책 연구의 동향>.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예 2] Ryerson, J. F. (1983).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Two mod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larke College of Technology, Potsdam, NY.

- (7) 신문 잡지 뉴스레터 기사. 신문, 잡지, 뉴스레터 등은 출판 일자가 분명할 경우, 저자명 뒤의 괄호 안에 출판 년, 월, 일을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판 연도와 월만 표기하거나 또는 출판 연도와 계절을 표기한다. 신문 기사의 경우, 기사 게재 면을 표기한다([예 1]과 [예 2]). 기사가 여러 면에 걸쳐 나뉘어 실린 경우는 기사가 실린 해당 면 모두를 기입한다([예 3]). 신문 사설이나 일반 기사가 쓴 신문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하고([예 1]), 신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독자나 특정인의 기고라면 기고자의 이름을 표기한다([예 2], [예 3]). 익명의 기고일 경우, 기사의 제목 두 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를 대신한다([예 4]).

[예 1] 한국신문 (1997, 7, 29). 심장 발작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는 신약 개발. 4면.

[예 2] 홍길동 (2001, 3, 12). 대통령의 말. <한국신문>, 6면.

[예 3] Schwarz, J. (1993, 9, 30). Obesity affects economic and social status.

The Washington Post, pp. A1, A4.

[예 4] 한국 언론의 미래 (2014, 3, 15). <한국신문>, 9면.

3) 온라인 자료 표기

- (1) 정기 간행물. 연구 제목 뒤에 출처 형태를 대괄호([])로 묶는다. 출처 형태는 다음에 제시한 표기 방식 중 하나를 따른다: [전자매체본], [On-Line], [Electronic version]. 그 뒤에 바로 출처명, 권수, 호수를 기입한 뒤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를 적는다. 국내 온라인 자료일 경우 “URL: 실제 URL” 형식으로 표기한다([예 1]). 외국 문헌일 경우는 URL 앞에 “Retrieved from”이라고 적는다([예 2]).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정기 간행물 문서일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표기하고 게시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다. 인쇄본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의 경우처럼 권 및 호수 기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간행물명과 URL만을 제시한다.

- [예 1] 추병완 (2012). 인터넷 중독과 자기 배려: 덕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자매체본.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3권 4호, 44-61. URL:
<http://www.kisa.or.kr/public/library/journal.jsp>
- [예 2] Duh, E. (2014). Exploring the impracticability of press freedom during a political transition [On-Line]. *Onlin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ies*, 4, 1-26. Retrieved from <http://www.ojcm.net/articles/41/411.pdf>
- (2) 비정기 간행물. 작성자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제목을 저자명으로 간주하여 해당 참고문헌 목록 란에 제시한다.
- [예 1] GVU's 8th WWW user survey. (*n.d.*). Retrieved from
<http://www.cc.gatech.edu/gvu/user-surveys-1997-10>
- (3) 연구보고서 및 세미나/심포지엄 자료.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처럼 문서 제공자 (호스트 기관)와 문서 작성자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기관명을 먼저 기입하고 웹 사이트 주소를 표기한다(예 1). 만일 문서 작성자를 먼저 쓸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문서가 게재 (upload)된 연도와 논문 제목을 기입한 후 괄호 안에 연구보고서 이름을 표기한다(예 2).
- [예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연구. URL: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List.jsp>
- [예 2] 윤주희 · 정찬모 · 신나리 · 모이누딘아흐메드 (2014).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KISA-WP-2013-0019). URL:
<http://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List.jsp>
- (4) 기타 전자 매체 자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쓴다(예 1). 온라인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는 기사 작성자를 쓰고, 괄호 안에 기사 작성일을 년, 월, 일로 표기한다(예 2).
- [예 1]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URL: http://kosis.kr/news/news.jsp?q_
- [예 2] 강희경 (2014, 3, 25). 화면 켜고 잠금 해제를 한번에 ...노크코드 대세 예감. 〈한국일보〉. URL: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
- (5) 영상물. 출처는 제목 옆에 대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예, [CD-ROM], [Computer Software], [영화], [TV 드라마] [비디오]). 영화는 제작사 소재 도시와 제작사 명을, TV 프로그램은 방영 지역과 방송사명을, 비디오테이프는 출시 회사 주소지를 적는다. 이들 매체의 인용은 감독(또는 제작자)의 이름으로 표기한다.

[예 1] 정류정 (감독) 성낙성 (제작) (2014). <점프를 하다> [영화]. 서울: 눈 엔터테인먼트.

[예 2] 은진원 (감독) (2014). <공룡의 눈물> [TV 드라마]. 서울: MBS TV.

[예 3] Miller R. (Producer). (1989). *The mind*. [TV series]. New York, NY: WNET.

4) 법률 자료의 표기

- (1) 판례(Court Decisions). ‘사건 이름 vs. 이름, 공개된 사건이 제시된 책의 권과 페이지, (법정, 판례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예 2], [예 3]).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판례명(연도)’ 혹은 ‘판례명, 연도’식으로 표기하며, 판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예 4], [예 5], [예 6]).

[예 1] 대법원 선고 98도679 판결(2000. 10. 27).

[예 2]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E.D. Wis. 1972).

[예 3]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D. Kan. 1981), *aff'd*, 727 F.2d 888(10th Cir. 1984).

[예 4] (대법원, 2000. 10. 27.)

[예 5] *Lessard v. Schmidt*(1972) 또는 (*Lessard v. Schmidt*, 1972)

[예 6] *Durflinger v. Artiles*(1981/1984) 또는 (*Durflinger v. Artiles*, 1981/1984)

- (2) 법령(Statutes). ‘법률명, 권 출처 § 절 번호(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예 2]). 법령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법률명(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3], [예 4]).

[예 1]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 9401 (1988).

[예 2] FTC Credit Practices Rule, 16 C.F.R. § 444 (1991).

[예 3]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예 4] FTC Credit Practices Rule (1991)

- (3) 입법자료(증언과 청문회, 법안과 결의안, 보고서와 문서 등). 증언과 청문회의 경우, ‘제목, xxx Cong.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법안과 결의안의 경우는 ‘xx. Res. xx, xxx Cong., 출처 페이지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2]). 보고서와 문서의 경우, ‘xx. Rep. No. xx-xxx (연도)’로 표기한다([예 3]).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제목 (연도) 또는 ‘(제목,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4], [예 5], [예 6]).

[예 1] RU486: The import ban and its effect on medical research, 101st Cong., 2d Sess. 35 (1990) (testimony of Ronald Chesemore).

[예 2] S. 5936, 102d Cong., 2d Sess. § 4(1992).

[예 3] S. Rep. No. 102-114, at 7 (1991).

[예 4] RU486: The Import Ban (1990) 또는 (RU486: The Import Ban, 1990)

[예 5] Senate Resolution 107 (1993) 또는 (S. Res. 107)

[예 6] Senate Report No. 102-114 (1991) 또는 (S. Rep. No. 102-114, 1991)

4. 숫자와 통계치의 표기

1) 일반적 규정

- (1) 모집단과 관련된 수치(parameters)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리스 문자는 기울여 쓰지 않는다(예 1). 그러나 표본과 관련된 통계치(statistics)를 위해 사용하는 기호들은 모두 기울여 쓰기를 한다(예 2). 전체 표본 수를 가리킬 때에는 이탤릭체로 N 을 쓰고, 전체 표본 중 하위 집단의 표본 수를 지칭할 때는 이탤릭체로 n 을 쓴다(예 3).

[예 1] σ , μ 여자, α , β_i , χ^2 , η^2

[예 2] N , Mx , df , SSE , MSE , t , F

[예 3] $N = 135$, $n = 30$

- (2) 수치가 1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는 통계치에 대해서는 소수점 앞에 영(0)을 덧붙인다(예, 0.23 cm; 0.48 s; $M = 0.89$; $SD = 0.29$; $B = 0.25$). 그러나 수치가 1 이하 또는 -1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예, 상관계수, 확률, R^2 , 표준 회귀계수), 소수점 앞에 영(0)을 붙이지 않는다($r = -.43$; $p = .028$; $R^2 = .43$; $\beta = .34$).

- (3) 통계 추정치(예, 표본평균, 회귀계수 등)를 보고할 때는 추정치의 변동성과 관련된 수치들(예, 표본편차, 표집오차 등)을 보고한다(예, $M = 3.87$, $SD = 0.92$; $B = 6.25$, $SE = 0.98$).

- (4) 추론통계 검증 시(예, t 검증, F 검증, χ^2 검증 등), 자유도와 정확한 p 수치를 함께 보고한다. 이 때, 정확한 p 수치는 소수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까지 보고한다. 단, .001보다 낮은 p 수치는 $p < .001$ 로 표시한다. $p < .05$ 나 $p < .01$ 은 표나 그림에만 한정하여 사용한다. p 수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계치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수까지만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예 1] $t(30) = .45$, $p = .031$.

[예 2] $t(393) = 1.34$, $p = .180$.

[예 3] $F(1, 394) = 6.82$, 부분 $\eta^2 = .04$, $p = .009$.

[예 4] $\chi^2(8) = 8.92$, $p = .350$.

[예 5] (표 밑의 확률주 표기) * $p < .05$. ** $p < .01$. *** $p < .001$.

- (5) 추론적 통계 검증 시, 효과 크기(effect size) (예, Cohen's d , 표준회귀계수, η^2 , ε^2 , ω^2 등)도 함께 보고하기를 권고한다.
- (6) 통계 기호와 수학적 기호들은 띄어쓰기를 한다(예, $a + b = c$). $a+b = c$ 식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5. 표와 그림의 표기

- (1) 표와 그림은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목을 붙인다. 표 제목은 해당 표 위에 위치시키는 반면,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 아래에 위치시킨다.

[예 1] 표 1.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예 2] 그림 1. 뉴스의 기호체계

- (2)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화살괄호(< >) 안에 표기한다(예, <표 1> 참조).
- (3) 책 또는 논문에서 표나 그림을 인용했을 경우, 출처를 아래의 예시에 따라 표기한다([예 1]: 국내 저서 인용; [예 2]: 외국 저서 인용; [예 3]: 국내 논문 인용; [예 4]: 외국 논문 인용). 책과 논문의 표기는 참고 문헌 목록에서의 표기와 동일하게 한다. 인용된 쪽수를 표기하고 사용 허락과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시한다.

[예 1] 출처: 통계청 (1990).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서울: 통계청, 23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예 2] 출처: Author, A. A. (1982). *Title of book*. New York, NY: Publisher, 103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예 3] 출처: 김춘석 · 양승찬 · 이강형 · 황용석 (2005).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동향과 쟁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 한국의 연구논문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36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예 4] 출처: Author, A. A. (1982). Title of article. *Title of Journal*, 50, 22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 (4)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일반주(주), 개별주(a, b, c), 확률주(* $p < .05$. ** $p < .01$. *** $p < .001$.), 출처 순으로 배열한다. 각 유형의 주는 들여쓰기 없이 표 아래 새로운 줄에서 시작한다.
- (5) 표의 본문에 정보를 제시할 경우, 측정값의 소수점 표기 기준과 단위 등을 통일시켜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수점 이하 표기는 두 자리를 넘지 않도록 한다.
- (6) 표의 세로 선은 사용하지 않고 가로 선만을 사용한다.

(7) 분산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할 경우, *MSE*를 제외한 *SS*와 *MS*는 생략하되, 효과크기와 유의확률을 반드시 제시한다(〈표 1〉 참조). 유의확률(*p* 수치)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의 내용이 많을 시에는 *F* 수치에 별표(*, **, ***)를 사용하고 표 밑에 확률주를 추가한다.

표 1. 자아통제와 스트레스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게임중독 변량분석

변산원	<i>df</i>	<i>F</i>	η^2	<i>p</i>
자아통제(A)	2	3.80	.35	.007
스트레스(B) ^a	1	1.54	.09	.113
A X B	2	2.23	.15	.027
집단 내 오차(S/AB)	30	(10.05)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a중간 수준의 스트레스 집단을 제외한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의 스트레스 집단 비교.

(8) 회귀분석 표에서는 *B*(비표준화 회귀계수), β (표준화 회귀계수), *t* 수치, 유의도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사례 수는 주에 나타내고, 회귀분석 방법(표준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표의 제목에 들어가게 한다.

(9) 모수치 추정치를 포함한 표의 경우, 가능하다면 신뢰 구간도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신뢰 구간은 대괄호([])를 사용하거나, 각 열에서 하한계(lower limit)와 상한계(upper limit)를 제시하여 보고한다(〈표 2〉 참조).

표 2. 자아 통제력 및 생활 만족도가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i>B</i>	β	<i>SE</i>	<i>t</i>	<i>p</i>	95% CI	
						<i>LL</i>	<i>UL</i>
상수	26.14	.62		60.88	< .001	20.85	30.17
성별	-2.93	-.09	0.36	-10.42	.009	-3.21	-2.53
자아 통제력	-5.74	-.17	0.05	-25.74	.001	-5.97	-5.35
생활 만족도	-2.11	-.07	0.07	-9.70*	.035	-2.22	-1.80
<i>F</i> (3,239) = 74.14, <i>p</i> = .001							
$R^2 = .36$, 수정 $R^2 = .32$							

주. *N* = 243. *SE* = 표준오차; CI = 신뢰구간; *LL* = 하한계; *UL* = 상한계.

출처: 홍길동·임격정(2005). 자아 통제력이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터넷커뮤니케이션연구>, 1권 1호, 136쪽에서 인용.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 (10) 회귀분석 또는 구조방정식모델 분석결과를 보고할 경우, 중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별도의 표로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표 3〉 참조).

표 3. 자아 통제력, 생활 만족도, 게임 중독, 학업성취도의 평균, 표준 편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자아통제력	–			
생활 만족도	.14*	–		
게임 중독	-.34***	-.25**	–	
학업성취도	.20**	.40***	-.43***	–
<i>M</i>	3.42	2.87	2.84	3.11
<i>SD</i>	1.02	1.11	1.21	0.84

주. $N = 243$.

* $p < .05$. ** $p < .01$. *** $p < .001$.

한국PR학회 제18대 집행부 현황

학회장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차기회장	한미정 (한양대학교)
총무이사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이형민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이사	박현순 (성균관대학교) 이유나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이사	정원준 (수원대학교) 김수연 (서강대학교) 홍문기 (한세대학교) 박동진 (한림대학교) 유현재 (서강대학교) 최유진 (동국대학교) 양정은 (평택대학교) 조수영 (경희대학교)
PR이론연구회장	황성욱 (부산대학교)
공공PR연구회장	최홍림 (선문대학교)
기업PR연구회장	유선욱 (한라대학교)
위기관리연구회장	성민정 (중앙대학교)
과학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회장	정의철 (상지대학교)
PR업무관행개선 위원장	신호창 (서강대학교)
PR윤리강령 위원장	조삼섭 (숙명여자대학교)
홍보학연구 편집위원장	한미정 (한양대학교)
감사	조삼섭 (숙명여자대학교) 김찬석 (청주대학교)
총무간사	김수현 (이화여자대학교)
편집간사	유은태 (한양대학교)

사단법인 한국PR학회

『홍보학연구』 논문공모 안내

한국PR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인 『홍보학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홍보학연구』는 매년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6회에 걸쳐 발간됩니다.

국제학술지 등재를 위해 응모원고는 반드시 영문초록(Abstract)과 함께 한글파일(hwp)로 보내 주셔야 하며, 상세한 논문투고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논문주제 : PR 관련주제 (분량: 200자 원고지 100~150매)
2. 논문마감일자 : 각 호별 별도 공지
3. 논문투고자격 : 본 학회 회원
4. 논문제출처 : 지난 18-4호부터 온라인 투고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http://kaspr.jams.or.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
5. 논문심사 및 통보 : 학회 편집위원과 외부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http://kaspr.jams.or.kr> 에서 결과확인
6. 논문작성요령 : 『홍보학연구』 각 호에 수록된 논문작성 규정 참고
7. 문의사항 : 편집간사 유은태(yet419@gmail.com)

『홍보학연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홍보와 관련된 주제라면 언제라도 환영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미디어 보도 중 publicity에 의한 영향력, 의존 정도, agenda setting과 관련된 문제들
2. PPL, BPL (Brand Placement)
3. 신문사 방송사 등 미디어회사들의 이미지 관리 (명성, 신뢰도, 공중 관계성 포함)
4. 미디어 회사들의 대 공중 (독자, 시청자 등) 관계
5. 조직 커뮤니케이션
6. 대 공중 커뮤니케이션 모델, 조사, 등
7. 기업 이미지 광고 (제품광고가 아닌 조직체 광고)
8. 공익 캠페인

9. 정치 캠페인과 광고
10. 채널 브랜딩 관련 이론과 조사들
11. 여론형성과 갈등 등에 관한 문제들/집단 간 갈등 포함
12. 사회적 이슈관리와 주창(advocacy) 광고
13. 기타 모든 조직체와 공중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제들

입회원서

本人은 貴會의 趣旨에 贊同하여 入會하고자 이에 入會願書를 提出합니다.

20

申請人

推薦人(正會員)

한국PR학회 貴下

성명	한글		영자		생년월일	
	한자					
주택 주소			주택 전화 FAX		주민등록 번호	
직장 주소			직장 전화 FAX			

학력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경력

기간	근무처	직위